



회칙

경기도 양주시 만송로 244

대표전화. 031-820-1500 | Fax. 031-820-1512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컨트리클럽은레이크우드컨트리클럽이라 칭한다.
그 영문표기는 LAKEWOOD COUNTRY CLUB으로 한다.

제2조 목적

본 컨트리클럽은 로얄개발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소유 경영하는
골프장 및 그 부대시설을 이용하여 골프동호인의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고
상호간의 친목과 체력향상을 도모하여 골프운동을 통한 국위선양과
국제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주소 등)

1. 본 컨트리클럽의 사무소는 경기도 양주시 만송로 244에 두고 필요한
장소에 연락 사무소를 둘 수 있다.
2. 회사의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소는 본 클럽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lakewood.co.kr>)에 게시한다.
3. 회원이 회사에 각종 통지나 신청 등을 할 경우에는 전2항에 규정한
주소나 연락처로 하여야 한다.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

본 컨트리클럽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2. 법인회원 3. 특별회원 4. 대우회원 5. 해외회원
6. 교포회원 7. 주중회원 8. 기타회원

제5조 정회원

입회금 및 명의개서료를 납입하고 이사회가 승인한 자로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법인회원

법인회원은 지정인 2명의 1계좌로 하는 회사의 각 법인체 회원으로
하며 회원가입 기간이 5년이 경과된 회원2인 이상의 추천을 얻어
소정의 입회금 및 명의개서료를 납입하고 이사회가 승인한 자로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가. 본 클럽의 설립 및 운영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 회사가 그 자격을 부여한 자로 한다.

나. 회사가 정한 소정의 입회 보증금을 납부한 자로서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회사가 승인한 자로 한다. 단, 법인체 특별회원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지정인을 무기명으로 할 수 있고 지정인 1인 1구좌(입회보증금 반액
납부 경우)로 할 수 있다.

제8조 대우회원

대우회원은 본 클럽 및 국가발전에 공로가 있는 인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쳐 회사가 추천한 자로 한다.

제8조의 1 해외 및 교포회원

해외회원은 외국인으로서 외국국적을 소유한 자이며, 교포회원은 해외에
주소를 둔 재외 교포에 한한다.

제8조의 2 주중회원

주중회원은 회원 자격의 존속기한을 정한 회원으로 일정기간 소정의 입회금을
납부하거나 기한제 소멸형 입회금을 납부한 후 회사가 승인한 자로 한다.

제9조 입회

본 클럽의 입회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회원증을 발급 받음으로서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제10조 입회금

1. 입회금은 회원으로 최초에 가입한자가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회사에
납부한 예탁금을 말하며 퇴회시 반환한다. 단,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할 시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일정기간 반환을 정지할 수 있다.
2. 주중회원 및 제7조 나목의 특별회원의 입회금 및 거치기간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 회원자격의 기간

1. 정회원의 자격은 종신제로 한다.
2. 법인회원의 자격은 종신제로 한다.
3. 제7조 가목의 특별회원의 자격연한은 2년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갱신할 수 있고, 제7조 나목의 특별회원의 자격은 입회시
납부한 입회금의 거치 기간과 동일하게 한다.
4. 대우회원의 자격연한은 1년으로 한다.

제12조 시설의 이용

제7조 가목의 특별회원 이외의 회원은 회사가 정한 소정의 요금을
지불하고 본 클럽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13조 이용의 제한

천재지변, 국가 사회의 현저한 변화, 기타 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 신상변동사항에 제출

회원은 주소 기타 신상에 관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사항을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외회원 및 교포회원도 주소 기타 신상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그 사항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입회금 반환청구 금지

입회시에 납입한 입회금은 거치 기간내에는 여하한 이유로도 이의
반환청구를 하지 못한다. 단, 회원 및 법인회원의 탈회 또는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입회금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해외회원과 교포회원도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입회금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제16조 자격의 승계

1. 특별회원 및 대우회원은 그 자격이 승계되지 아니한다.
2. 정회원의 자격은 소정의 입회비를 납입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양도할 수 있다.
3. 정회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중의 1인이 소정의
입회비를 납입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그 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
4. 해외회원과 교포회원은 외국국적을 소유한 자 또는 재외교포 상호간에만
한하여 양도하되 소정의 입회비를 납입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그 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
5. 해외회원과 교포회원이 사망한 때에는 위 3항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상속인이 외국인 이거나 재외교포이어야 한다.

제17조 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탈회 2. 양도 3. 제명 4. 사망
5. 법인회원의 경우 그 법인의 해산 6. 1년이상 등록 취소 또는 회사의 해산

제17조의 1 회원권 양도 및 양수

1. 회원권의 양도, 양수에 대한 금지명령이 있을 경우 및 회원권의 투기가
예상되거나 불공정 거래 등으로 골프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고 판단
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회사는 명의개서를 거부할 수 있다.
2. 주중회원 및 제7조 나목의 특별회원은 자격은 양도되지 아니한다.
단, 가입기간 종료시 본 클럽의 이사회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회원권의 양도, 승계, 법인회원의 지명인 변경 등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칙

경기도 양주시 만송로 244
대표전화. 031-820-1500 | Fax. 031-820-1512

회사가 정한 개서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4. 본 회칙 제19조에서 정한 징계위원회의 징계요구 의결이 있는 때로부터 자격정지기간 중에는 해당 회원권의 양도양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 탈회

회원이 탈회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용지로서 신고하여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입회금 거치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을 시에는 회사가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제19조 자격의 제한

회원이 다음 사유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사의 승인으로 제명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안에서 그 자격을 정지하거나 예약을 거절할 수 있다.

1. 본 컨트리클럽에 대하여 소정기간 제요금 또는 대금을 체납하고 2차 이상의 지불청구에도 불응한 경우
2. 본 컨트리클럽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였다고 인정된 행위를 한 경우
3. 본 컨트리클럽의 회칙 기타 제규칙 및 골프에타켓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본 컨트리클럽 회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
5. 당 골프장 회원권을 동일인이 2매이상 소지할 수 없다.
6. 당 골프장 회원을 공개모집한 결과 응모자가 응모예정인원수를 초과할 경우 동지역 타골프장 회원권 다수 소지자로부터 가입을 배제한 후 공개추첨하여 결정한다.
7. 당 골프장 회원으로 미성년자는 입회를 거절할 수 있다. 단, 선수양성을 목적으로 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20조 회원의 권리

1. 회원은 회사가 경영하는 골프장 및 부대시설을 다른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2. 정회원 및 제7조 나목의 특별회원중 개인은 본 클럽이 회원을 위하여 개최하는 각종 경기대회와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제21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본 회칙과 회사가 따로 정한 이용약관, 제반규칙 및 모집요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골프장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이용시간을 예약하여야 한다.
3. 회원은 주소, 직장, 기타 회원명단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당 클럽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는 회원이 감수하여야 하고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4. 회원은 그 자격 또는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4장 객원(Visitor)

제22조 객원의 플레이

객원은 소정의 그린피(Green Fee) 기타 요금을 지불함으로써 본 컨트리클럽의 시설을 이용하고 플레이(Play)할 수 있다.

제5장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제23조 이사회

1. 본회칙에서 이사회라 함은 로얄개발주식회사 이사회를 말하며, 그 결의 기타 사항에 관하여는 동사 정관을 준용한다.
2. 본 컨트리클럽의 이사장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를 겸임한다.
3.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상정된 사항은 이사회에서 처리한다.

제24조 운영위원회

1. 본 클럽은 골프장의 건전한 발전 및 원활한 운영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
2. 본 클럽의 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본 클럽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에 관한 제반규정은 클럽이 정한 별도의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4. 운영위원회는 그 필요한 업무에 관하여 자문 또는 건의를 받기 위하여 경기분과위원회, 징계분과위원회 등의 전문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장 기타

제25조 Local Rule 및 임시규칙

본 컨트리클럽의 Local Rule의 제정 및 경기규칙의 변경은 경기분과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단, 경기시에 있어 임시규정할 규칙은 경기분과위원회가 제공할 수 있다.

제26조 회칙 개정

1. 본 회칙은 운영위원회의 발의를 거쳐 이사회의 결의로 개정할 수 있다.
2. 회사는 회칙 개정시 본 클럽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개정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3. 회원은 회칙 개정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4. 회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회칙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조 회칙의 설치 및 공람

본 회칙은 소정의 장소에 비치하여 회원 또는 객원(Visitor)의 요구가 있으며 반드시 공람하여야 한다.

제2조 회칙의 개정

본 회칙은 운영위원회의 발의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개정할 수 있다.

제3조 적용 및 준용의 우선순위

본 회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회사 정관을 준용하고 정관에 없으면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정하는 바에 의하거나 관습을 적용한다.

제4조 도난 등에 대한 책임

본 컨트리클럽은 소정의 장소에 임치한 경우 외에 발생한 회원 또는 객원의 소지품 도난, 분실 기타의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조 코스내 출입금지

플레이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임의로 코스내를 출입할 수 없다.

제6조 시행

1. 본 회칙은 198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은 1985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3. 본 회칙은 1986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4. 본 회칙은 1992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5. 본 회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회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회칙은 2010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8. 본 회칙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